제1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2. 5.(화)

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거창군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 18.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3. 1.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3. 1.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재난지수 100미만의 피해인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제외규정을 두어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군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 (안 제2조)
-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 (안 제4조)영 제8조에 따른 국고지워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피해와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함

- 지원기준에 관하여 정함 (안 제5조)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함
- 지원제외에 관하여 정함 (안 제6조)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재난지원금 지급, 반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나.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사유시설 및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